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4,956,000	28,948,680
일반회계	880,000,000	26,400,000
특별회계	84,956,000	2,548,680
공기업특별회계	63,600,000	1,908,000
수도사업특별회계	40,000,000	1,2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600,000	708,000
기타특별회계	21,356,000	640,680
수질개선특별회계	4,770,000	143,1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0,000	90,0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14,000	3,42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05,000	15,15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479,000	44,370
치수사업특별회계	1,270,000	38,1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63,000	16,890
주차장특별회계	9,655,000	289,6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618,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